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6. 7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6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3 (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재무과장 정 부 응
- 나. 개정사유
 -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함
- 다. 주요내용
 - "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,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 (이하 "제증명등"이라 한다)"을 "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,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"으로 개정 (안 제1조)
 -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"6. 보건사회관계"를 별지와 같이 개정 (안 제3조 별표 1)
 - 국민체육진흥광고 설치허가수수료는 동조례 제3조(요율) 광고물등 설치 허가 수수료와 중복되므로 삭제 (안 제3조의 2)
 - "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"는 조례 제3조의 2 삭제에 따라 삭제 (안 제5조 제3항)
 - "제증명등"을 "제증명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할것"으로 하고 "생활보호법 제3조,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자, 시설보호, 자활보호대상자"를 "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"로 하며, "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공부열람에 대하

여는 열람수수료를"을 "읍면대장과 리장,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"
으로 개정 (안 제7조 단서, 동조 제1호, 동조 제3호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○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-8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6. 17

제 출 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사유

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"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납부 수수료,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 (이하 "제증명등"이라 한다)"을 "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,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"으로 개정 (안 제1조)
-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율표중 "6. 보건사회관계"를 별지와 같이 개정 (안 제3조 별표1)
- 국민체육진흥광고 설치허가수수료는 동조례 제3조(요율)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와 중복되므로 삭제 (안 제3조의 2)
- "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"는 조례 제3조의 2 삭제에 따라 삭제 (안 제5조 제3항)
- "제증명등"을 "제증명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할것"으로 하고 "생활보호법 제3조,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자, 시설보호, 자활보호대상자"를 "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"로 하며, "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"을 "읍면 대장과 리장,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"으로 개정 (안 제7조 단서, 동조 제1호, 동조 제3호)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 "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 납부수수료,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(이하 "제증명 등"이라 한다)을 "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,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"으로 한다.

제3조의 2(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)를 삭제한다.

제5조(징수방법)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감면등) 단서중 "제증명등"을 "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"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"생활보호법 제3조,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, 시설보호, 자활보호대상자"를 "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"로 하며 동조 제3호중 "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"을 "읍면대장과 리장,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"으로 한다.

【별표1】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"6, 보건사회관계"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발급하는 <u>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</u>과 <u>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 규칙 제43조 및 제44조</u> 규정에 의한 <u>지적납부 수수료,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(이하 "제증명등"이라 한다)</u>에 대한 <u>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 - - - - - - - <u>제증명과 인허가의수리,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</u></p>
<p>제3조의2(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) <u>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광고물등 관리규칙 제19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-1과 같다.</u> 다만, <u>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(삭 제)</p>
<p>제5조(징수방법) ① ~ ② (생략) ③ <u>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징수방법) ① ~ ② (생략) <u>(삭 제)</u></p>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7조 (수수료의 감면등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적, 유선 및 도선관계 <u>제증명등</u>은 제외한다.</p> <p>1. <u>생활보호법 제3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 보호, 시설보호, 자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지역예비군 중. 소대장 및 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7조 (수수료의 감면등)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<u>제증명등 개별법령</u>에서 따로 정한 것 - - - .</p> <p>1. <u>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 <p>3. - - - - - <u>읍면대장과 리장,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.</p>

신 구조 문 대비 표

현			개		
행			정		
별표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			별표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		
구	분	기준 수수료액	구	분	기준 수수료액
6. 보건사회관계			6. 보건사회관계		
①	삭 제		①	호텔업신고	70,000원
②	삭 제		②	호텔업신고 사항 변경신고	35,000원
③	삭 제		③	콘도미니엄업 신고	70,000원
④	삭 제		④	콘도미니엄업 신고사항변경신고	35,000원
⑤	삭 제		⑤	여관(농원 여관)업 신고	25,000원
⑥	삭 제		⑥	여관(농원 여관)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	13,000원
⑦	삭 제		⑦	여인숙업 신고	3,500원
⑧	삭 제		⑧	여인숙업신고 사항 변경신고	2,000원
⑨	삭 제		⑨	공동탕업 신고	6,000원
⑩	삭 제		⑩	공동탕업신고 사항 변경신고	3,000원
⑪	삭 제		⑪	가족탕업신고	6,000원
⑫	삭 제		⑫	가족탕업신고 사항 변경신고	3,000원
⑬	삭 제		⑬	한증막업신고	6,000원
⑭	삭 제		⑭	한증막업신고 사항 변경신고	3,000원
⑮	삭 제		⑮	사우나탕업 신고	40,000원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			개		
구	분	기준	구	분	기준
		수수료액			수수료액
①⑥	삭 제		①⑥	사우나탕업 신고사항변경신고	20,000원
①⑦	삭 제		①⑦	증기탕업 신고	40,000원
①⑧	삭 제		①⑧	증기탕업신고 사항 변경신고	20,000원
①⑨	삭 제		①⑨	복합목욕탕업 신고	40,000원
②⑩	삭 제		②⑩	복합목욕탕업 신고사항변경신고	20,000원
②①	삭 제		②①	이. 미용업 신고	2,300원
②②	삭 제		②②	이. 미용업 신고사항변경신고	1,200원
②③	삭 제		②③	컴퓨터게임장 업 허가	20,000원
②④	삭 제		②④	컴퓨터게임장 업 허가사항 변경허가	10,000원
			②⑤	종합유원 시설업 허가	40,000원
			②⑥	종합요원시설 업 허가사항 변경허가	20,000원
			②⑦	기타유기장 업 허가(신고)	20,000원
			②⑧	기탕유기장업 허가(신고)사항 변경허사(신고)	10,000원
			②⑨	위생관리용역 업 신고	2,300원
			③⑩	위생관리 용역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	1,200원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			행			개			정		
구	분	기준	수	료	액	구	분	기준	수	료	액
						③1	세탁업신고				2,300원
						③2	세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				1,200원
						③3	위생처리 용역업 신고				2,300원
						③4	위생처리 용역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				1,200원
						③5	기타위생 용품업 신고				2,300원
						③6	기타위생 용품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				1,200원
						③7	장난감 제조업 신고				2,300원
						③8	장난감제조 업 신고사항 변경신고				1,200원
						③9	세척제 제조업 신고				10,000원
						④0	세척제 제조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				5,000원
						④1	이.미용사 신규 면허				2,300원
						④2	이.미용사 신규면허증 재교부				2,000원
						④3	공중위생 업소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				2,000원
						④4	공중위생 업소 상호변경				2,000원

※공중위생법 제25조 관련 영업 양수
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신규에 준한다